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(4급~ 7급상당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별정직공무원(고위나급~7급상당) 채용 최종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

1 합격자 명단

● 4급상당(1명)

응시코드	응시번호	성명
기획A4	08	○ 호 ○

※ 기획A4 예비합격자 : 기획A4-02

● 5급 상당(1명)

응시코드	응시번호	성명
기획A5	17	○ 승 ○

※ 기획A5 예비합격자 : 기획A5-10, 기획A5-09

● 6급 상당(1명)

응시코드	응시번호	성명
기획A6	17	○ 정 ○

※ 기획A6 예비합격자 : 기획A6-16, 기획A6-18

● 7급 상당(1명)

응시코드	응시번호	성명
유해발굴7	03	○ 태 ○

※ 유해발굴7 예비합격자 : 유해발굴7-02

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- 등록대상 : 합격자 (총 4명)
- **등록기간 : 2026. 11. 4.(수) 10:00 ~ 15:00**
- 등록장소 : 서울 중구 퇴계로 173, 남산스퀘어빌딩 19층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 채용담당자
- 제출서류

 ① 신원진술서 1부 <서식 1>

 *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(3㎝×4㎝) 사진 부착

 ②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각 1부

 ③ 신체검사용 **채용 신체검사서** 1부 <서식 2>

 * 별도의 검진 기관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**합격자께서 개별적으로**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시고 신체검사를 완료한 뒤 채용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
 ④ 신원진술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**사진*** 1장

 * 이미지파일 이메일로 채용후보자 등록 전까지 제출(jinsilrecruit@korea.kr)

- 제출방법 : 합격자 본인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**신분증*을 소지**한 후 등록장소에 **직접 방문 제출** 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
3 기타 유의사항

-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을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임용 예정입니다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실(☎02-3393-9778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문의는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(☎02-3393-9778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서식 1>

신 원 진 술 서

※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☑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성 명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【 사 진 】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
등록기준지						
주 소						
실거주지	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연락처	직장전화 : 휴 대 폰 : E-mail :	
국 적	□ 대한민국	□ 복수국적 국가명:	□ 외국국적 국가명:	배우자 및 자녀 국적		
자격·면허						

재 산	본인 및 배우자	부동산 : 만원,	동산 : 만원,	채무 : 만원
	미혼 자녀	부동산 : 만원,	동산 : 만원,	채무 : 만원

정당·사회단체 활동	□ 있음	단 체 명	기 간	직 책
			. . ~ . .	
	□ 없음		. . ~ . .	

병 역	본 인	군 별	병 과	최종 계급	기 간	미필 사유
					. . ~ . .	
	자녀 (성명)				. . ~ . .	
	자녀 (성명)				. . ~ . .	

학 력 (고교이상)	학 교 명	기 간	전공 학과	학 위	소 재 지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경 력	기관 또는 업체명		기 간	직 책(직급)	상벌 관계(일자)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해외 거주 사실	거주 국가		기 간	거주 목적	동반 가족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가족 관계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직 업·직 책	거 주 지
부모 배우자 자녀					
배우자 부모					
북한 거주 가족					

친교 인물	관 계	성 명	직 업·직 책	연 락 처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**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**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작 성 자 성명 인 (서명 또는 날인)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<서식 2>

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[별지 제7호 서식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	cm	체 중		kg
허리둘레		cm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) 우: ()

종 양 질 환		이비인후질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골격계 질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부X선 검사	
기 타			

마약류 검사

필로폰		대마		케타민		엑스터시		코카인		아편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합 격 [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(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걸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판정보류"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 다.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"양성" 또는 "음성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(예시: "만성골수성백혈병"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
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※ 응시자의 질환이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4. 검사 내용 중 "마약류 검사" 항목만 제외하거나,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5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